

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19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의거 「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(안)」을 마련하였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으로,
- 나. 「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(안)」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내용

- 1)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사항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 지정(2개소)
 - 기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(2개소)

구분	기정	변경(안)	증감	비고
도시재생활성화지역	52	52	-	-
경제기반형	4	5	증1	김포공항 일대(신규)
중심시가지형	16	17	증1	남산 일대(신규)
일반근린형	32	30	감2	구로2(해제), 독산2(해제)

※ 남산일대 지정 관련하여,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일부 중복 시 서울역 일대 구역 변경 추진

3. 추진경위

- '23.2. : 「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」 수립
 - '23.7. :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관련 수요조사
 - '24.6.5.: 「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(안)」 주민공청회(예정)
- ※ 공청회 및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수렴 절차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여부 결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15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전략팀 허효성 (☎ 2133-8657)